보도자료

प्रश्री स्पर्धानः! स्पर्टेंट निष्यं प्रमा

보도시점 2024. 10.20.(일) 12:00 / 배포 2024. 10.18.(금) 08:30 <10. 21.(월) 조간 >

##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

- 1,748개 은행·저축은행약관을 심사하여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 -
- 이어서 **여신전문금융** 및 **금융투자** 분야 불공정 약관도 **순차적** 시정요청 계획 -

### ※ 주말 엠바고 주의: 10월 20일(일요일) 낮 12시부터 보도가능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총 1,748개의 약관을 심사하여 이 중 79개 조항 (14개 유형)이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금융위원회 (이하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하였다.

\* 2023년 제·개정된 은행약관 1,166개, 저축은행약관 582개 중 은행 75개(11개 유형), 저축은행 4개(3개 유형) 약관조항이 불공정하여 시정 대상

공정위는 매년 은행·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 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되는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먼저 심사가 완료된 은행·저축은행 분야부터 불공정 약관 시정을 요청하였다.

#### [불공정 약관 유형(14개 유형, 총 79개 조항)]

#### <은행>

- ①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제한할 우려가 있는 조항(28개 조항)
- ② 고객의 부작위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의제하는 조항(12개 조항)
- ③ 계약해지 사유를 추상적·포괄적으로 정한 조항(10개 조항)
- ④ 은행에 대한 부당한 면책 조항(7개 조항)
- ⑤ 개별통지를 생략하거나, 통지의 수단 또는 효력발생시기가 부적절한 조항(6개 조항)
- ⑥ 은행의 책임범위를 제한하거나 고객의 책임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한 조항(5개 조항)
- ⑦ 은행에게 상계권(채무변제 충당권)을 포괄적으로 부여한 조항(2개 조항)
- ⑧ 가압류를 거래승인 취소 사유로 정한 조항(2개 조항)
- ⑨ 은행의 경과실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1개 조항)
- ⑩ 급부의 내용을 은행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한 조항(1개 조항)
- ⑪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업신용정보를 포괄적으로 정한 조항(1개 조항)

#### <저축은행>

- ① 급부의 내용을 저축은행이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한 조항(2개 조항)
- ② 저축은행의 자의적인 보증채무 이행 조항(1개 조항)
- ③ 고객의 기한의 이익을 부당하게 상실시키는 조항(1개 조항)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하여 고객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조항이 문제되었다. 이 중에는 "기타 은행에서 정한 사유"와 같이 계약 당시에는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추상적·포괄적인 사유로 은행이 임의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게 한 경우가 있었다[☞ 5면 참조].

\* 에이(A)은행 전자금융서비스 특약: "기타 은행에서 정한 사유로 입출금이 제한되는 경우"서비스 제한 가능

그리고 고객의 부작위에 대하여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문제되었다. 의사표시 의제조항은 고객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는 경우의사표시가 표명 또는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개별고지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약관에 개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 없이 의사표시가 의제되도록 정하고 있어 고객이모르는 사이에 원치 않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127] 6면 참조].

\* 비(B)은행 ○○○○페이서비스 약관: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은행은···(중략)···가입고객이 적용 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숭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지와 관계 없이 개별통지 절차를 생략하는 조항이 문제되었다. 이 약관은 통지 대상이 불특정 다수라는 사정만으로 웹사이트 게시로 갈음하거나 사전통지 없이도 장기미사용을 이유로 거래가 자동중단되도록 정하는 등 고객의 절차상 권리가 제한되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과 8면, 9면 참조].

- \* 씨(C)은행 〇〇〇회원 약관 : "은행은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웹 사이트 등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디(D)은행 자동송금거래약관 : "최근 1년 동안 송금전용계좌를 통하여 자동송금 거래가 없는 경우 **장기미사용**으로 이 거래는 **자동중단**되며"

그 밖에도 급부의 내용을 은행·저축은행이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변경할수 있게 한 조항에 대해서도, 급부는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당사자일방이 임의로 결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안되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127] 10면, 11면 참조].

- \* 이(E)은행 수입거래약정서: "수입자가 결제자금을 원화로 납입하는 경우, 수입환 어음의 결제시기는 수입자의 납입일자에 불구하고 은행의 외화사정 등에 의하여 결제통화를 매입할 수 있는 날로 한다"
- \* 에프(F)저축은행 사채보증약정서 : "갑이…(중략)…사전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사전구상금은 기일에 지급할 사채원리금을 사전구상일로부터 기일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상사법정금리로 상호저축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할인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불공정 약관 다수가 시정되어\*, 은행·저축은행의 책임은 강화되고 은행·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 및 중소기업 등 금융거래 고객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금융당국은 은행에 약관 변경을 권고하고, 각 은행이 약관을 개정하는데 통상 3개월 소요

공정위는 현재 심사 진행 중인 여신전문금융 및 금융투자 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도 연내 신속하게 시정 요청하는 한편, 금융업계가 불공정 약관을 반복 사용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공정위·금감원 공동으로 금융업계 대상 불공정 약과 개선을 위한 간담회 설명회 개최(23.2월, '24.3월)

#### [붙임] 2024년 은행 및 저축은행 불공정 약관 심사 주요 내용

담당 부서	시장감시국 약관특수거래과	책임자	과 장	신용호 (044-200-4483)
		담당자	사무관	조형수 (044-200-4498)
			실무수습 변호사	박태규 (044-200-4487)
			실무수습 변호사	정기욱 (044-200-4484)







## 붙임

## 2024년 은행 및 저축은행 불공정 약관 심사 주요 내용

# 1 개 요

- □ 공정위는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2023년 제·개정된 은행, 저축 은행의 금융거래 약관 1,748개(은행 1,166개, 저축은행 582개)를 심사하여 14개 유형(은행 11개, 저축은행 3개), 총 79개 불공정 약관 조항(은행 75개, 저축은행 4개)에 대하여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하였다.
  - (은행 약관) 1,166개 약관을 심사하여 은행의 자의적인 서비스 중단·제한 조항, 의사표시를 의제하는 조항, 가압류를 거래승인 취소 사유로 정한 조항 등 11개 유형, 총 75개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 요청하였다.
  - (저축은행 약관) 582개 약관을 심사하여 저축은행의 일방적인 급부내용 결정·변경 조항, 자의적인 보증채무 이행 조항 등 3개 유형, 총 4개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 요청하였다.
- □ 공정위는 은행(1,166개)·저축은행(582개), 여신전문금융(1,215개) 및 금융투자(1,242개) 등 **총 4,205개 금융약관을 심사**하고 있으며, **분야별로 심사가 완료**되는 **즉시** 금융당국에 **시정 요청**하는 방식으로 불공정한 금융약관을 최대한 신속하게 시정해 나가고 있다.
  - ※ 금융위는 은행·저축은행으로부터 신고·보고 받은 제·개정 약관을 공정위에 통보하고, 공정위는 통보받은 약관을 심사하여 금융위에 시정요청을 할 수 있으며,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은행법 제52조, 저축은행법 제18조의3)



\* 금융위는 은행·저축은행 약관의 보고 접수, 통보, 변경 권고·명령 등의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함 (은행법 제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저축은행법 제3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 2 주요 불공정 약관 조항

# 1.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제한할 우려가 있는 조항** (은행 28개 조항)

## 가. 약관 조항 [예시]

【오픈뱅킹서비스 이용약관(은행)】

제12조 (서비스의 중단)

- ① ...(전략)...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다.
- 2. 서비스 운영상의 필요

【전자금융서비스 특약(은행)】

제15조 (서비스 이용제한 및 유의사항)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한합니다.
- 5. 기타 은행에서 정한 사유로 입출금이 제한되는 경우

- □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중단**, **제한·변경**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가 추상적·포괄적**이어서 고객이 예측하기 어렵거나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 □ 위 약관조항들은 "서비스 운영상의 필요", "기타 은행에서 정한 사유" 등 서비스의 중단·제한 사유를 추상적·포괄적으로 정하여 은행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는 바,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이다(약관법 제10조 제1호·제2호 및 제6조 제2항 제1호).

## 2. 고객의 부작위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의제하는 조항 (은행 12개 조항)

## 가. 약관 조항 (예시)

#### 【○○○○페이서비스 약관(은행】

#### 제4조 (약관의 변경)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은행은 그 내용을 우편,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시지 서비스(SMS) 등을 통하여 적용 예정일로부터 최소 1개월 이전까지 통지하며, "가입고객"이 적용 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 고객의 작위나 부작위가 고객의 진정한 의사와는 관계없이 특정 의사표시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불리 해지거나 워하지 않는 효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 따라서, 의사표시 의제조항은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라는 뜻을 사전에 따로 개별 고지하도록 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 □ 위 약관조항은 '고객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약관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뜻을 따로 개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 없이 의사표시가 의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정한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보는 조항'으로 무효이다 (약관법 제12조 제1호).

## 3. 계약해지 사유를 추상적 · 포괄적으로 정한 조항 (은행 10개 조항)

## 가. 약관 조항 (예시)

#### 【오픈뱅킹서비스 이용약관(은행)】

제5조 (서비스 이용 신청 및 해지)

- ② 은행은 이용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 신청을 거절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5. 약관을 위반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시도하는 경우

## 나. 시정 요청 사유

- □ 계약의 해제·해지는 비록 의무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경미한 것이어서 계약의 존속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면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고, 그 사유 또한 구체적으로 열거되어야 할 것이다.
- □ 위 약관조항은 "약관을 위반", "부당한 행위" 등 계약해지 사유를 추상적·포괄적으로 정하여 은행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는 바,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무효이다(약관법 제9조 제2호).

## 4. 은행에 대한 부당한 면책 조항 (은행 7개 조항)

## 가. 약관 조항 (예시)

#### 【증권연계계좌서비스 약관(은행)】

제15조 (면책)

③ 전산장애, 회선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위탁계좌의 거래와 관련된 업무처리의 지연, 처리불능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나. 시정 요청 사유

- □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로 인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민법상 기본워칙이다(및법 제750조).
  - 전산시스템은 사업자가 계약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로서 관리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전산 또는 회선 장애 등에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
- □ 위 약관조항은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배제하고 있어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및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으로 무효이다(약관법 제7조 제1호·제2호).

# 5. 개별통지를 생략하거나, 통지 수단 또는 통지의 효력발생시기가 부적절한 조항 (은행 6개 조항)

## 가. 약관 조항 (예시)

#### 【○○○회원 약관(은행)】

#### 제14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② 은행은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웹사이트 등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자동송금거래약관(은행)】

#### 제14조 거래의 중단

③ 최근 1년 동안 송금전용계좌를 통하여 자동송금 거래가 없는 경우 장기미사용으로 이 거래는 자동중단되며 재거래를 위해서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거래중단 해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 기본 계약서(은행)】

#### 17. 통지

(a) <u>은행이 송부한 서면 통지는 고객이 신청서 양식에 기재한 주소로 송부된 경우</u> 효력을 발휘합니다.

- □ 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 고객이 해당 내용을 제 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 대상이 **불특정 다수**라고 하더라도 **개별 통지**하여 정보제공을 정확히 해야 한다.
  -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 또한 고객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 통지**하여 고객이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절차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는데(민법 제111조), 위 약관조항은 은행이 송부한 서면 통지가 "송부된 경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여 도달 시가 아닌 발송 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
- □ 위 약관조항들은 통지 내용의 중요도에 대한 고려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개별통지를 웹사이트 게시로 갈음하거나, 사전통지 없이도 장기미사용으로 거래가 자동중단되게 하고, 서면통지의 효력발생시기를 도달 시가 아닌 송부된 경우로 정하고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 6. 급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한 조항 (은행 1개 조항, 저축은행 2개 조항)

## 가. 약관 조항 [예시]

#### 【수입거래약정서(은행)】

#### 제8조 상환채무의 부담과 수입환어음 등의 결제

3. 수입자가 결제자금을 원화로 납입하는 경우, 수입환어음의 결제시기는 수입자의 납입일자에 불구하고 은행의 외화사정 등에 의하여 결제통화를 매입할 수 있는 날로 한다. 수입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i)지연이자와 (ii)납입시와 수입환어음에 의한 실제 외환 매입일간의 환율의 변동에 따른 환차를 전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금액을 은행의 청구에 따라 곧 원화 또는 기타 통화로 은행에 지급한다. (이하 생략)

#### 【사채보증약정서(저축은행)】

#### 제14조 (사전구상)

갑이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한 사전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u>사전</u> <u>구상금은</u> 기일에 지급할 사채원리금을 사전구상일로부터 기일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상사법정금리로 상호저축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할인한 금액으로 합니다.

#### 【○○디지털뱅크 이용약관(저축은행)】

제9조 (이용계좌 지정 및 이체한도, 수수료 등)

⑤ 기타 수수료는 회사가 정하여 회사의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에 게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 **급부**는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결정 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 그러나, 위 약관조항들은 "은행의 외화사정 등" 포괄적 사유를 들어 은행이 수입환어음의 결제시기를 임의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이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금액을 고객이 부담하도록 하여 고객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 사전구상금 할인을 "**상호저축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하도록 정하여 저축은행이 **할인금액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우려가 있다.
- □ 수수료 또한 급부에 해당하므로 고객이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약관에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수수료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그 내용을 사전에 알리고 고객의 서비스 탈퇴 기회 제공등 절차상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 그러나, 위 약관조항은 기타 수수료를 저축은행이 정하여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에 게시하는 바에 따른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저축은행이 임의로 수수료를 결정 또는 변경하더라도 고객은 사전에 알기 어렵고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다.
- □ 위 약관조항들은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이다(약관법 제10조 제1호 및 제6조 제2항 제1호).

## 7. 가압류를 거래승인 취소 사유로 정한 조항 (은행 2개 조항)

## 가. 약관 조항 (예시)

#### 【구매론 거래기업 약정서(판매기업용)(은행)】

#### 제5조 압류, 가압류 등의 사유발생시 처리

본인은 은행이 <u>거래승인한 매출채권</u>이 제3채권자로부터 압류, <u>가압류</u> 등이 <u>발생한</u> <u>경우</u> ...(중략)... <u>은행은 기거래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u>. 단, 은행은 동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이를 재개할 수 있다.

- □ 은행이 구매론\* 거래와 관련하여 자신이 **승인한 거래를 취소**하는 것은 구매론 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다.
  - \*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의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은행이 그 구매의 만기일 또는 그 전에 대금을 대신 결제하고 이후 구매자로부터 상환받는 결제서비스
  - 따라서, 거래승인 취소는 고객의 채무불이행 또는 고객의 신용이나 담보가치에 본질적인 악화가 있는 등 고객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 □ 가압류는 불확정채권에 기해서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취하는 임시 보전절차로 쉽게 인용이 되므로 남용의 소지가 있고, 확정된 권리에 기한 압류와는 다르게 가압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고객의 신용 이나 담보가치의 본질적인 악화 등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 위 약관조항은 임시적 보전절차에 불과한 가압류를 거래승인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이다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 8. 기타 불공정 약관 유형

- ① 은행의 책임범위에 특별손해 등을 일률적으로 제외하거나, 고객의 책임범위를 '은행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 등으로 정한 조항(은행 5개 조항)
  - ⇒ (시정 요청 사유) 특별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배상책임이 있으므로, 은행의 책임범위가 상당한 이유 없이 축소되거나 고객의 책임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어 부당
- ② 고객의 귀책사유로 자동이체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은행의 경과실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은행 1개 조항)
  - ⇒ (시정 요청 사유) 귀책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은행도 책임을 져야하며, 은행이 계약상 이행하여야 할 서비스 또는 급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중과실뿐만 아니라 경과실 책임도 지는 것이 타당
- ③ 은행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개발자를 사용하는 경우, 개발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업고객의 신용정보를 포괄적으로 정한 조항(은행 1개 조항)
  - ⇒ (시정 요청 사유) 기업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도 신용정보의 제공 목적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신용정보주체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이 타당
- ④ 은행에게 채무변제 충당권을 부여하면서, 충당되는 채무의 종류를 '고객이 은행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 등으로 포괄적으로 정한 조항(은행 2개 조항)
  - ⇒ (시정 요청 사유) 고객이 채무변제에 충당되는 채무를 예상하기 어렵고, 은행의 자의적인 채무변제 충당으로 고객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
- ⑤ 주채무자인 고객의 주채무 이행통지가 없는 경우, 보증인인 저축은행이 **시전통지** 없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고객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저축은행 1개 조항)
  - ⇒ (시정 요청 사유) 사전통지 없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이중변제에 따른 위험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객에게 전가될 수 있어 부당
- ⑥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 등이 **발송된 때**부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도록 정한 조항(저축은행 1개 조항)
  - ⇒ (시정 요청 사유) 압류통지 등이 도달한 때가 아닌 **발송된 때**는 아직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부당

## 3 의의 및 향후 계획

- □ 이번 시정 요청으로 은행·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 및 기업고객들의 알 권리와 예측가능성을 높여 불공정 금융거래 약관으로 인한고객의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금융당국과 약관의 불공정성 및 시정방안 등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를 거치고, 금융 분야 불공정 약관 개선을 위한 간담회·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있어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효과적으로 시정되고, 동일· 유사한 불공정 약관을 차단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 공정위는 이번 은행 및 저축은행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요청에 이어, 여신전문금융 및 금융투자 약관도 신속하게 심사하여 심사가 완료되는 즉시 금융당국에 불공정 약관 조항의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